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524515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소연, 성소영

피고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김윤찬

변론 종결2022. 11. 16.

판결 선고2023.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5,847,57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나. 76,603,174원 및 그 중 74,358,000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5.6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89,681,930원 및 그 중 87,489,000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4.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421,535,518원 및 그 중 411,228,000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4.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80,705,433원 및 그 중 78,732,000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4.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399,442,414원 및 그 중 394,250,446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543,461,671원 및 그 중 540,000,000원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1.0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600,741,010원 및 그 중 593,300,000원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1.0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 10,626,210원 및 그 중 10,625,00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1. 9. 24.까지는 연 4.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영농조합법인(이하 'C영농'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출

(1) 2005. 8. 1.자 1,500,000,000원 대출금 ① 원고는 C영농에, 1998. 10. 31.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2억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1-1대출'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01. 6. 11. C영농과 사이에 위 기보증부 대출분을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1번 대출'이라 한다).

② 원고는 C영농에, 1999. 7. 1.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억 9200만 원을(이하 '2-1대출'이라 한다), 2000. 5. 15.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억 9200만 원을(이하 '2-2대출'이라 한다), 2001. 6. 11.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42,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2번 대출'이라 한다).

③ 원고는 C영농에 1999. 11. 30.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억 800만 원을, 2001. 6. 11. 3억 8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3번 대출'이라 한다).

④ 피고는 2002. 4. 13. C영농에게 위 1번, 2번, 3번 대출의 채무금을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기간 2002. 4. 13.부터 2005. 4. 13.(이후 2005. 7. 30.로 연장) 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C영농에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E 1,706,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4번 대출'이라 한다). C영농은 위 대출금으로 위 1번, 2번, 3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피고의 신용보증서 특약란에는 '기보증부 대출분 상환조건 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05. 8. 1. C영농에 기보증부대출분(4번 대출) 대환을 조건으로 하고 보증기간 2005. 8. 1.부터 2025. 8. 1.까지인 피고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담보로 하여 1,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5번 대출'이라 한다). 피고의 신용보증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기보증부 대출분 대환조건 승인, 보증부대출실행 즉시 상환대상자금을 상환하고 해당 증빙서 및 기존 채무관계서류를 보증부대출채권 관련서류에 첨부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9. 7. 31.자 470,000,000원 대출금 ① 원고는 2012. 8. 2. 피고의 2012. 7. 31.자 '대출과목 G,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대출채무 1억 원, 보증금액 9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6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이 대출금으로 5번 대출금의 일부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5번 대출 중 1억 원을 대환하였고, 원고는 총 4회에 걸쳐 6번 대출의 대출기간을 2019. 8. 2.로 연장하였고, 피고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을 2019. 8. 2.까지로 연장하였다.

② 원고는 2015. 8. 3. 피고의 2015. 7. 31.자 '대출과목 G,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대출채무 1억 원, 보증금액 9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7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이 대출금으로 5번 대출금의 일부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5번 대출 중 1억 원을 대환하였고, 원고는 7번 대출의 대출기간을 2019. 7. 31.로 연장하였고, 피고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을 2019. 7. 31.로 연장하였다.

③ 원고는 2016. 8. 1. 피고의 2016. 7. 15.자 '대출과목 G,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대출채무 1억 원, 보증금액 9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8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이 대출금으로 5번 대출금의 일부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5번 대출 중 1억 원을 대환하였다. 이후 원고는 총 2회에 걸쳐 8번 대출의 대출기간을 2019. 8. 1.로 연장하였고, 피고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을 2019. 8. 1.로 연장하였다.

④ 원고는 2017. 7. 31. 피고의 2017. 7. 21.자 '대출과목 G,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대출채무 1억 원, 보증금액 9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8월'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9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이 대출금으로 5번 대출금의 일부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5번 대출 중 1억 원을 대환하였고, 원고는 총 2회에 걸쳐 8번 대출의 대출기간을 2020. 3. 31.까지로 연장하였고, 피고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간을 2020. 3. 31.로 연장하였다.

⑤ 원고는 2018. 8. 1. 피고의 2018. 7. 26.자 '대출과목 G,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대출채무 1억 원, 보증금액 9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10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이 대출금으로 5번 대출금의 일부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5번 대출 중 1억 원을 대환하였다.

⑥ 원고는 2019. 7. 31. 피고의 2019. 7. 31.자 '대출과목 G,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대출채무 470,000,000원, 보증금액 423,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0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47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11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6번 내지 10번 대출금채무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C영농은 11번 대출금으로 6번 내지 10번 대출금채무를 대환하였다.

(3) 2019. 7. 31.자 90,000,000원 대출금 ① 원고는 2013. 8. 1. 피고의 2013. 7. 31.자 '대출과목 G,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대출채무 1억 원, 보증금액 9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12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이 대출금으로 5번 대출금의 일부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5번 대출 중 1억 원을 대환하였고, 원고는 총 4회에 걸쳐 2019. 8. 1.로 연장하였고, 피고도 신용보증서의 연장기간을 2019. 8. 1.로 연장하였다.

② 원고는 2019. 7. 31. 피고의 2019. 7. 30.자 '대출과목 G,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대출채무 9000만 원, 보증금액 8100만 원(보증비율),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0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9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13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이 대출금으로 12번 대출금채무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이 대출금으로 16번 대출금을 대환하였다.

(4) 2019. 7. 25.자 90,000,000원 대출금 ① 원고는 2014. 7. 25. 피고의 2014. 7. 22.자 '대출과목 G, 용도 영농자금, 대출채무 1억 원, 보증금액 85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14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이 대출금으로 5번 대출금의 일부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5번 대출 중 1억 원을 대환하였고, 원고는 총 3회에 걸쳐 대출기간을 2019. 7. 25.로 연장하였고, 피고도 신용보증서의 연장기간을 2019. 7. 25.로 연장하였다.

② 원고는 2019. 7. 25. 피고의 2019. 7. 23.자 '대출과목 G, 용도 영농자금, 대출채무 9000만 원, 보증비율 765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0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9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15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이 대출금으로 14번 대출금을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15번 대출금으로 14번 대출금을 대환하였다.

(5) 2019. 7. 31.자 100,000,000원 대출금 원고는 2019. 7. 31. 피고의 같은 일자 '대출과목 H,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대출채무 1억 원, 보증비율 9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0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16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이 대출금으로 5번 대출금의 일부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5번 대출 중 1억 원을 대환하였다.

(6) 2017. 5. 12.자 500,000,000원 대출금채무 ① 원고는 2014. 5. 12. 피고의 2014. 5. 8.자 '대출과목 I, 용도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대출채무 6억 원, 보증비율 5억 10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5억 원을 대출하였다(17번 대출). 피고는 위 신용보증의 보증기간은 2017. 5. 12.로 연장하였다.

② 원고는 2017. 5. 12. 피고의 2017. 5. 11.자 '대출과목 J, 용도 기타운전자금, 대출채무 5억 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영농에 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18번 대출), 위 신용보증은 17번 대출금채무를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이 대출금으로 17번 대출금채무를 대환하였고, 원고는 18번 대출채무의 대출기간을 2020. 8. 12.로 연장하였고, 피고도 신용보증의 보증기간을 2020. 8. 12.로 연장하였다.

(7) 보증사고의 발생 ① C영농은 18번 대출의 변제기일인 2020. 8. 12.이 다가옴에 따라 피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18번 대출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신용보증의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부 상환과 C영농 소유의 전남 무안군 K외 5필지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이루어진 가압류 말소를 요구하였고, C영농은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2020. 11.경 이 사건 공장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C영농은 18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다른 대출금들의 이자 지급도 연체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5번, 11번, 13번, 15번, 16번, 18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료제출 미비 및 채권보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면책을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채무자가 소외 L(이하 'L'), 면책적 채무인수전 M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출

(1) 2020. 9. 1.자 698,000,000원 대출금 ① 원고는 2008. 10. 15. 피고의 2008. 10. 10.자 '대출과목 N, 용도 원료곡매입자금, 대출금액 700,000,000원, 보증비율 85%,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소외 M에게 대출금리 2%로 7억 원을 RPC 벼 매입자금으로 대출하였다(이하 '19번 대출'이라 한다).

- ② 한편, M은 19번 대출이 이루어진 2008. 10. 15. 원고의 정기예금(계좌번호 1 생략)상품에 가입한 후 7억 원을 예치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인 같은 달 20. 위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
- ③ 원고는 2009. 9. 29. 피고의 2009. 9. 28.자 '대출과목 N, 용도 원료곡매입자금, 대출금액 700,000,000원, 보증비율 85%'인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M에게 대출금리 1.5%로 7억 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20번 대출'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은 19번 대출금을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M은 19번 대출금을 대환하였다.
- ④ 이후 원고는 M에 대하여 수차례 대환대출을 하여 왔는데, 각 대출시마다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⑤ 한편 M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7. 9. 15. 채무자가 L로 변경되었고, 피고도 피보증인이 M에서 L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 ⑥ 그후 원고는 L에 대하여 총 4회에 대환대출을 하였고, 각 대출시마다 피고는 기보증부 대출분 대환을 조건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왔다. 원고는 2020. 9. 1. 피고의 2020. 8. 24.자 '대출과목 O, 용도 원료곡매입자금, 대출채무 698,000,000원, 보증금액 593,3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698,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21번 대출'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은 직전의 기보증부 대출금(보증번호 P, 금액 593,300,000원)을 대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C영농은 기보증부 대출금을 대환하였다.
- (2) 2020. 9. 1.자 600,000,000원 대출금채무 ① 원고는 1998. 12. 8. 피고의 1998. 12. 7.자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M에게 6억 원을 N으로 대출하였다(이하 '22번 대출'이라 한다).
- ② 이후 원고는 대출의 변제기일이 도래할 무렵마다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M에게 신규 대출을 하거나 대환대출을 하였고, 피고는 각 대출에 대하여 기보증부 대환을 조건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③ 한편 M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7. 9. 18. 채무자가 L로 변경되었고, 피고도 피보증인이 M에서 L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 ④ 원고는 2020. 9. 1. 피고의 2020. 8. 25.자 '대출과목 N, 용도 원료곡매입자금, 대출금액 60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L에 6억

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23번 대출'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은 기보증부 대출금의 대환을 조건으로 하였다. L는 기보증부 대출금(보증번호 Q, 보증금액 54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3) 보증사고의 발생 ① L는 21번, 23번 대출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1번, 23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1번 대출에 대하여는 자금용도위배로 인하여, 23번 대출에 대하여는 자료제출미비를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채무자 소외 R에 대한 대출금

(1) 2009. 3. 2.자 18,000,000원 대출금 채무 ① 원고는 2005. 3. 4. 피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R에게 변제기 2007. 3. 4.로 18,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24번 대출'이라 한다), 2007. 3. 2. 피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R에게 변제기 2009. 3. 2., 연 이율 3%로 S 18,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25번 대출'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09. 3. 2. 피고의 2009. 3. 2.자 '대출과목 T, 용도 영농자금, 대출금액 18,000,000원, 보증금액 15,3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R에게 T로 연 이율 6.91%로 18,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26번 대출'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은 기보증부 대출금의 대환을 조건으로 하였다. R은 이 대출금으로 25번 대출을 대환하였다. 이후 원고는 총 11회에 걸쳐 26번 대출의 대출기간을 2021. 3. 2.로 연장하였고, 피고도 신용보증의 보증기간을 2021. 3. 2.로 연장하였다.

(2) 보증사고의 발생 R이 26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26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초대출 및 대환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의 신용보증약관 및 신용보증면책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신용보증약관]

제1조(정의) 4. '신용보증조건'이라 함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채권자, 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계정)과목, 자금용도, 보증비율, 특약사항 등의 보증내용을 말합니다.

제6조(보증부채무의 권리보전 및 담보대위)

② 채권자는 보증부채무의 보증기한이 경과하거나 제5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2호의 통지사유(이하 '보증사고 통지사유'라 합니다)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이 채권자에게 통지한 채권보전요구통지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4조(면책사항)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1.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 및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6조(보증부채무의 권리보전 및 담보대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을 소홀히 하여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제15조(면책범위) 관리기관의 면책범위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신용보증 면책기준(직접보증용)에 의합니다.

[신용보증면책기준]

7. 약관 제5조(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 및 담보대위)를 위반, 보증부채권의 채권보전을 소홀히 해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가. 관리기관이 채권자에게 통지한 채권보전요구통지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 면책범위 장애받은 재산가액에서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7호증, 을 제1 내지 4,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C영농 5번, 11번, 13번, 15번, 16번, 18번 대출의 신용보증서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2. 4. 13. C영농에 '대출과목 U, 용도 기타(농수산물유통업), 보증금액

1,706,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서 앞면의 '특약'란에는 '동일인

보증한도초과보증승인, 기보증부 대출분 상환조건 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4번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C영농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번 대출금으로 기보증부

3번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피고는 2005. 7. 22. C영농에 '대출과목 N<기타 정책>,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보증금액 1,50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서 앞면의 '특약'란에는 '기보증부대출분대환조건 승인, 보증부대출실행 즉시 상환대상자금을 상환하고 해당 증빙서 및 기존 채무관계서류를 보증부대출채권 관련서류에 첨부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원고가 5번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C영농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번 대출금으로 위 4번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C영농은 피고의 '대출과목 G,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보증금액 47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1번 대출을 받아 기존의 6번 내지 10번 대출금채무를 대환한 사실, 11번 대출금의 담보가 된 신용보증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기보증부 대출분 대환조건승인'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영농은 피고의 '대출과목 G,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보증금액 8100만 원'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3번 대출을 받아 12번 대출금채무를 대환한 사실, C영농은 피고의 '대출과목 G, 용도 영농자금, 보증비율 7650만 원'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5번 대출을 받아 14번 대출을 대환한 사실, C영농은 피고의 '대출과목 V, 용도 2004부채경감특별자금, 보증금액 9000만 원'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6번 대출을 받아 5번 대출금의 일부를 대환한 사실, C영농은 피고의 '대출과목 J, 용도 기타 운전자금'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8번 대출을 받아 17번 대출금을 대환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번, 11번, 13번, 15번, 16번, 18번 대출금의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보증약관상의 신용보증조건에는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특약사항이 포함되고, 신용보증조건에 맞게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야 그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인데, 특약사항에 기재된 기존 채무관계서류 및 신용보증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각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먼저 각 대출의 신용보증약정에 기존의 신용보증약정의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보증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이른바 갱신 보증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보증의 보증기간 연장에 불과하고

따라서 갹신보증서 발급 당시 남아 있는 기존 채무도 갹신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나, 한편 제2차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한도거래대출이 이루어져 그 대출에 의한 채무 잔액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용인하면서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고 제2차 보증에 의한 근보증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2차 신용보증약정은 제1차 신용보증약정과 는 보증한도를 달리하고 보증기간도 새로 정하였 으며,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새로 신용보증약정서도 새로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보증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제2차 신용보증약정은 제1차 신용보증약정과 는 별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277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4번 대출은 1번, 2번, 3번 대출금 합계 10억을 대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나,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2002년부터 영농조합법인이 W사업의 자금지원사업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C영농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루어졌고, 대출금액의 연간 25% 이상이라는 사업의무실적요건이 부과된 대출기간 3년인 대출로 기존의 1번, 2번, 3번 대출과는 그 내용이 상이하고 대출금액과 기존의 1번, 2번, 3번 대출금 합계를 훨씬 초과하는 1,706,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4번 대출은 1번, 2번, 3번 대출과는 그 보증조건이 달라 기존의 보증계약들과는 동일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여 설령 기존의 보증계약이 유효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후의 5번, 11번, 13번, 15번, 16번, 18번 대출금의 신용보증약정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기존 신용보증 및 채무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각 대출금의 신용보증서의 특약란에 '보증부대출실행 즉시 상환대상자금을 상환하고 해당 증빙서 및 기존 채무관계서류를 보증부대출 채권관련서류에 첨부할 것'이라 기재되어 있고, 신용보증약관이 '신용보증조건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말하고, '신용보증조건에 맞게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신용보증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존의 신용보증서 중에는 위와 같은 기존채무관계서류를 첨부하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아예

없거나, 특약사항란이 아닌 보증서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 금차 갱신보증한 신용보증관련 서류(대출서류 및 전표 차·대변 포함)와 기존 신규 및 갱신 신용보증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존의 신용보증서 사본이나, 채무관계서류의 제출을 하도록 정한 것은 피고가 보증채무이행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서 요구하는 것이지,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여부나 신용보증이행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보전요구통지서를 접수하고도 그 접수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C영농에 대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감정평가액 3,536,646,580원에서 각 근저당권의 2020. 10. 7. 기준 피담보채권액 2,591,428,743원(= 2,190,000,000원 + 401,428,743원)을 공제한 945,217,837원의 범위에서 그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면책기준 제7호 가목은 관리기관이 채권자에게 통지한 채권보전요구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구상권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는 장애받은 재산가액에서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책임을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서 선순위채권액이란 선순위 피담보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까지는 증감변동하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보전조치기한이후에도 그 피담보채무는 증가하여 채권최고액에 이르는 경우까지는 그 채권이 선순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채권보전조치기한 당시에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면책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장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X은행, 채권최고액 3,084,0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Y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인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3,564,000,000원은 이 사건 공장의 감정평가액 3,536,646,580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채권조치미이행을 이유로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L 21번, 23번 대출의 신용보증서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L는 2020. 9. 1. 피고의 '대출과목 O, 용도 원료곡매입자금, 보증금액 593,3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1번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피고의 '대출과목 N, 용도 원료곡 매입자금, 보증비율 90%'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3번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각 대환한 사실, L의 채무상환 연체와 사업중단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21번, 23번 대출금의 각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1번 대출금에 대하여는 최초 19번 대출 당시 19번 대출금이 입금된 당일 M이 이를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였으므로 자금용도에 위배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M이 19번 대출이 이루어진 당일 정기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19번 대출금 상당액을 예치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나, 이후 5일만에 위 정기예금계좌가 해지된 사실도 인정되는바, M이 RPC 벼 매입자금 용도로 19번 대출금을 받아 이를 5일동안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M이 이를 위 벼 매입자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M 또는 채무를 인수한 L가 원고로부터 받아 온 RCP 벼 매입자금대출은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의 농가에 벼 판로를 확보하여 주고 산지 쌀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대출로서, 대출을 받기 원하는 업체가 당해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받아 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자금을 대출받아 온 바, 설령 최초 대출의 신용보증서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21번 대출금의 신용보증에 최초 대출의 하자가 승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피고는 23번 대출에 대하여, 기존의 채무관계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존 채무관계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면책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R 24번 대출의 신용보증서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R이 피고의 '대출과목 T, 용도 영농자금, 보증금액 15,3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6번 대출을 받아 그 보증조건대로 25번 대출금을 대환한 사실, R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26번 대출금의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4번, 25번 대출의 하자가 26번 대출에 승계되고, 기존 대출금 관련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48,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R은 원고로부터 S대출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위 S으로의 대환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그런데, R이 버섯을 재배하는 원고의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의 심사 후 기존대출상품과는 다른 농기업 운전자금을 받은 사실, 26번 대출은 25번 대출과 대출과목, 용도, 이율(26번 대출 6.91%, 25번 대출 3%)이 상이한 사실, R은 26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조건대로 25번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6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25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일뿐 아니라, 기존의 24번, 25번 대출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505,847,573원 및 그 중 500,000,000원¹⁾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76,603,174원 및 그 중 74,358,000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24.까지는 연 5.6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89,681,930원 및 그 중 87,489,000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24.까지는 연 4.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80,705,433원 및 그 중 78,732,000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24.까지는 연 4.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99,442,414원 및 그 중 394,250,446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24.까지는 연 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543,461,671원 및 그 중 540,000,000원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24.까지는 연 1.0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00,741,010원 및 그 중 593,300,000원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24.까지는 연 1.0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626,210원 및 그 중 10,625,00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9. 24.까지는 연 4.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명주

1) 원고가 구하는 각 보증채무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